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기 관 경 고

제 목 원예작물 고품질 시범사업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내 용

충청남도(○○○○○과)에서 FTA 등 농산물에 대한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생산 및 기능보강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매년 ‘원예작물 고품질 시범사업(2015년 8,070백만원, 2016년 6,716백만원, 2017년 10,356백만원)¹⁾’을 추진하였다.

1. 지방의원(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²⁾.

1) 2015년 8,070백만원(도비 2,014 시군비 2,021, 자부담 4,035), 2016년 6,716백만원(도비 1,542, 시군비 1,805, 자부담 3,369), 2017년 10,356백만원(도비 2,589, 시군비 2,589, 자부담 5,178)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에 세부사업별 산출내역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의원의 요구나 지역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예산지원이 요구되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에 따른 경비 산정 기준도 세우지 않은 채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한 후 도의원 등이 요구하는 지역 사업을 특정하고 연초에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집행하였고, 또한 연중에 추가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특히 아래 [표1]과 같이 위 기관에서 예산편성 시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서상의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은 산출근거 내역과, 공식적인 수요조사 없이 도의원 등의 요구에 따라 세부적으로 사업을 정하여 연초 시·군에 통보한 [붙임]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포괄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다.

[표1] 예산편성 시 사업설명서상의 산출근거 내역(본예산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요구액)		산출근거 내역
2015년도	계	5,986,0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5,986,000천원 - 지역 시범사업(22개소 × 272,090천원 = 5,986백만원)
	도 비	1,493,000	
	시군비	1,500,000	
	자부담	2,993,000	
2016년도	계	6,836,2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1,489,780천원(도비부분) - 기능보강사업 205,000천원, 생산 및 재배단지 조성 470,000천원 - 비닐하우스 등 시스템, 자재 지원 416,500천원 - 토양(환경)개선사업 50,000천원, 토양훈증제 지원 323,280천원 - 축제 및 체험 지원 사업 25,000천원
	도 비	1,489,780	
	시군비	1,920,820	
	자부담	3,425,600	

2) 행정안전부에서는 포괄사업비는 의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의원의 선심성사업 등 예산의 비효율적인 활용 소지가 타 사업에 비해 크고 의원과의 마찰 회피 명목으로 활용될 경우 자치단체에 대한 의회통제 약화 등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2012.7.21. 개정하여 포괄사업비 편성을 금지토록 하였음

구 분	예산액(요구액)		산출근거 내역
2017년도	계	7,075,5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7,075,500천원(전체)
	도 비	1,768,875	-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2,200,000천원
	시군비	1,768,875	- 시설채소 등 기능보강 지원 630,000천원
	자부담	3,537,750	- 안정생산 및 재배단지 조성 1,300,000천원 - 시설장비 및 자재 지원 2, +45,500천원

※ 충청남도 제출자료 재구성

더구나 위 관서에서 2016. 0. 00. 시행(00000과-0000)한 ‘2016년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 변경 지원계획 알림’ 공문서를 살펴보면 당시 업무담당자인 00관 000가 000장까지 보고한 전자문서에 기재한 의견사항으로 “도의원 지역현안 사업으로 제1회 추경 추가 확보(도비) 지원계획 시달 문서입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이는 도의원 재량사업비임을 잘 알 수 있다.

2. 특정인을 보조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보조금 지원

위 관서에서는 도의원의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예산편성된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정식적인 보조금 지원 절차 없이 사전에 도의원 등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 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보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대상자로부터 신청 및 선정 등의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아무런 근거와 절차 없이 특정인을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1번 사항의 [표1]과 같이 ‘2015년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후 2015. 1. 19. [붙임]과 같이 지역별 세부사업을 정하여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선별기 교체지원 사업(보조금 140백만원)’에 대해 도의원으로부터 요구되어진 특정인(○○○○조합)을 지정하여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6년 사업 중 ‘시설채소 생산단지 육성사업(보조금 412백만원)’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충청남도 전(前) ○○○○사의 요구에 따라 당초 ‘○○○○○○○○법인’을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인의 사업포기로 인해 부여군에서는 보조금 반납여부를 위 관서에 문의하자 반납처리를 보류하라는 통보를 받아 사업추진을 일시 중단하였고 이후 부여군의회로부터 ‘○○○○○○○○○○법인’을 특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연락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반 기능보강사업(보조금 69백만원)’의 경우도 도의원의 요구로 당초 ‘○○○○○○○○○○법인’을 사업자로 지정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청양군에서 도의원과 협의하여 보조사업자를 ‘○○○○○○법인 ○○○’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2017년 사업 중 ‘스크린설치 보수공사(보조금 70백만원)’의 경우 위 관서에서는 2017. 1. 3. [붙임]과 같이 지역별 세부사업을 정하여 보조금 지원 계획서를 시·군에 통보하였으나, 부여군에서는 지원 계획서가 위 관서로부터 시달되기도 전인 2016. 12. 28. 특정 법인인 ‘○○○○○○○○법인(대표 ○○○)’을 지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더구나 ○○○○○○○○○법인(대표 ○○○)에 지원된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보조금 57백만원)’과 ○○○○○○○○○법인(대표 ○○○) ‘저온창고 설치사업(보조금 200백만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아닌 타 지역구 의원이 특정하여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렇듯 위 관서에서는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모절차,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심의 등의 과정 없이 매년 도의원 및 전(前) 충청남도 간부출신 공무원 등으로부터 요구되어 특정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하였다.

[표2] 특정인을 사전에 지정하여 추진한 주요 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및 주요내용	보조사업자	보조금			자부담	지역
			계	도비	시군비		
2015	선별기 교체지원 (배 선별기 교체)	○○○○○조합(○○○)	140,000	70,000	70,000	140,000	천안
	공기열이용 에너지절감사업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	○○○○○○○○○법인 (○○○)	499,230	249,615	249,615	500,000	부여
2016	시설채소생산단지 (스마트팜 온실 신축)	○○○○○○○○○법인 (○○○)	411,842	205,921	205,921	491,425	부여
	블루베리 시험포 일괄물주기시스템(관수시설)	○○○	25,954	12,977	12,977	30,046	청양
	토마토작목반 기능보강 (양액재배시설)	○○○○법인 ○○○ (○○○)	69,238	34,619	34,619	70,761	청양
	시설하우스에너지절감시설 (자동보온 덮개)	○○○○(○○○)	25,976	12,988	12,988	25,977	청양
2017	인삼유통시설현대화사업* (선별장, 저온창고 등)	○○○○법인(주)○○ (○○○)	260,000	130,000	130,000	260,000	논산
	스크린설치보수공사 (온실스크린보수 지원)	○○○○법인(○○○)	67,284	33,642	33,642	75,216	부여
	시설하우스설치지원 (시설하우스 보수 지원)	○○○○○○○○○법인 (○○○)	57,852	28,926	28,926	62,151	부여
	저온창고 설치사업* (저온창고 설치)	○○○○○○○○○법인 (○○○)	200,000	100,000	100,000	200,000	부여
	시설하우스 신축지원* (시설하우스 신축)	○○○○○○○법인 (○○○)	600,000	300,000	300,000	600,000	부여

※ 충청남도 제출자료 재구성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특정인(단체) 지정 사업 다수 있음(별표 참조)

* 2017년 사업 중 ‘인삼유통시설현대화사업’, ‘저온창고 설치사업’ 및 ‘시설하우스 신축지원’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사전에 특정하였으나, 해당 시군의 매칭예산 편성 지연으로 감사일 현재 미집행

3.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의6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관련 서류를 근거로 정산 검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 집행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1번 사항에서 언급하였듯이 매년 수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원예작물 고품질 시범사업’을 수십억원의 막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정산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³⁾.

3) 원예작물 고품질 시범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한 실제 집행 서류 등을 확인하는 정산 검사는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고 위 관서에서는 단순히 시·군별 총 집행액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

이렇듯 매년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합동감사기간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별표]의 세부사업 중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사업 중 청양군을 통해 ○○○○○○○○○○법인(대표 ○○○)에 지원된 보조사업(총 사업비 60백만원 : 보조금 3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의 경우 청양군에서는 가공시설 축조를 위해 위 보조사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인 ○○○○○○(대표 ○○○)이 체결한 실제 계약금액을 확인하지도 않고(계약서 없음) 위 건설업자가 보조사업자에게 청구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금액(60백만원)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지급한 내역(31백만원)만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적정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위 [표2]에 기재된 2015년 및 2016년 보조사업 중 부여군을 통해 ○○○○○○○○○○법인(대표 ○○○)에 지원된 ‘공기열이용 에너지절감사업(총 사업비 999백만원 : 보조금 499백만원, 자부담 500백만원)’ 및 ○○○○○○○○○○법인(대표 ○○○)에 지원된 ‘시설채소 생산단지 육성사업(총 사업비 903백만원 : 보조금 412백만원, 자부담 491백만원)’의 경우처럼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공개경쟁 등을 통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는 교부조건⁴⁾이 없어 보조사업자가 시설 설치공사 등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설계금액 전체를 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적인 낙찰차액을 통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및 보조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기관경고] ① 앞으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에 세부사업별 산출내역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② 특정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

③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동 사업 건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산편성 이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군에 통보한 내역

<2015년도 본예산>

구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
합계	계	5,986,000	1,492,500	1,500,500	2,993,000
천안시	소 계	1,070,000	263,500	271,500	535,000
	친환경 포도농가 토양개량제 지원	100,000	25,000	25,000	50,000
	선별기 교체지원	140,000	35,000	35,000	70,000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	40,000	6,000	14,000	20,000
	오이작목반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700,000	175,000	175,000	350,000
	멜론작목반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90,000	22,500	22,500	45,000
공주시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범사업	150,000	37,500	37,500	75,000
보령시	방울토마토 시설지원	70,000	17,500	17,500	35,000
계룡시	계룡시농업인 저온창고설치	80,000	20,000	20,000	40,000
부여군	소 계	3,230,000	807,500	807,500	1,615,000
	쌈채류 재배단지 육성	200,000	50,000	50,000	100,000
	고소득작목 재배단지 육성	200,000	50,000	50,000	100,000
	버섯저온창고신축	30,000	7,500	7,500	15,000
	버섯재배시설 장비현대화	2,800,000	700,000	700,000	1,400,000
청양군	소 계	520,000	130,000	130,000	260,000
	농산물보관창고	80,000	20,000	20,000	40,000
	배사과연구회기능보강사업	80,000	20,000	20,000	40,000
	배작목반 기능보강사업	40,000	10,000	10,000	20,000
	고추 및 포도연구회 기능보강사업	40,000	10,000	10,000	20,000
	기후변화 시범사업	120,000	30,000	30,000	60,000
	토마토활성화사업	160,000	40,000	40,000	80,000
홍성군	딸기집하장비구입	100,000	25,000	25,000	50,000
예산군	소 계	766,000	191,500	191,500	383,000
	블루베리 생산기반 보강	40,000	10,000	10,000	20,000
	쪽파생산기반조성	60,000	15,000	15,000	30,000
	충남염연초생산조합 앞담배 유통시설 설치	666,000	166,500	166,500	333,000

<2015년도 추경예산>

시군	사업명	지역, 대상	계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
합 계	계		2,084,000	521,000	521,000	1,042,000
천안시	소 계		224,000	56,000	56,000	112,000
	선별기 교체 지원	○○○ ○○○	140,000	35,000	35,000	70,000
	오이작목반 비닐하우스 교체	동부 6개읍면	84,000	21,000	21,000	42,000
보령시	소 계		200,000	50,000	50,000	100,000
	원예작물 저온저장시설	○○○○○ ○회	100,000	25,000	25,000	50,000
	양송이버섯운반탑차구입	○○○○○ ○○○○○ ○법인	100,000	25,000	25,000	50,000
논산시	딸기수경농가열선사업	논산시	400,000	100,000	100,000	200,000
계룡시	계룡시농업인 저온창고설치	계룡시	80,000	20,000	20,000	40,000
부여군	소 계		1,060,000	265,000	265,000	530,000
	토마토 특화단지 공기열이용 에너지절감사업	부여군 ○○○○○법 인	1,000,000	250,000	250,000	500,000
	오미자재배시설		60,000	15,000	15,000	30,000
금산군	특용작물 경쟁력강화	금산군	120,000	30,000	30,000	60,000

<2016년도 본예산>

구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
합계	계	3,246,000	806,500	806,500	1,633,000
천안시	소 계	1,010,000	252,500	252,500	505,000
	화훼우량종구지원사업	150,000	37,500	37,500	75,000
	오이작목반 비닐하우스 교체	700,000	175,000	175,000	350,000
	멜론작목반 비닐하우스 교체	100,000	25,000	25,000	50,000
	○○○오이 비가림 시설	60,000	15,000	15,000	30,000
당진시	소 계	80,000	20,000	20,000	40,000
	고품질 상추 수확 후 관리 시범사업	80,000	20,000	20,000	40,000
부여군	소 계	1,160,000	285,000	285,000	590,000
	○○농협 토양개선사업	100,000	20,000	20,000	60,000
	시설채소 생산단지 육성	1,000,000	250,000	250,000	500,000
	세도방울토마토축제용품지원	60,000	15,000	15,000	30,000
청양군	소 계	876,000	219,000	219,000	438,000
	블루베리하우스 시험포재배 일괄물주기 시스템	56,000	14,000	14,000	28,000
	채종작목반 기능보강사업	60,000	15,000	15,000	30,000
	블루베리 연구회 기능보강사업	160,000	40,000	40,000	80,000
	친환경 딸기 칠갑산 작목반 기능보강	100,000	25,000	25,000	50,000
	토마토 작목반 기능보강사업	140,000	35,000	35,000	70,000
	맥문동연구회 기능보강사업	60,000	15,000	15,000	30,000
	복숭아 작목반 기능보강사업	100,000	25,000	25,000	50,000
	고추연구회 기능보강사업	80,000	20,000	20,000	40,000
	토마토연구회 기능보강사업	120,000	30,000	30,000	60,000
예산군	소 계	120,000	30,000	30,000	60,000
	블루베리재배환경개선(토양피복)	120,000	30,000	30,000	60,000

※ 토양훈증제, 과수노린제트랩설치 지원사업은 제외

<2016년도 추경예산>

시군	사업명	지역, 대상	계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
합계	계		1,555,000	388,500	388,500	778,000
아산시	포도 집하장 설치	○○농협	200,000	50,000	50,000	100,000
당진시	과수농가 저온저장시설 지원	당진시 일원	125,000	31,000	31,000	63,000
금산군	소 계		300,000	75,000	75,000	150,000
	갯잎 주산지 안정생산 지원	금산군 일원	200,000	50,000	50,000	100,000
	지황주산지 안정생산지원 (연작장해및토양개량)	금산군(○ ○○○○○)	100,000	25,000	25,000	50,000
부여군	소 계		100,000	25,000	25,000	50,000
	○○ ○○○○법인 농산 물 보관창고	○○면 ○ ○리	60,000	15,000	15,000	30,000
	부여 ○○○○○○○살균가설교 체	○○면	40,000	10,000	10,000	20,000
서천군	소 계		330,000	82,500	82,500	165,000
	농산물 탈피시설 및 결속기	○○면, ○○면 ○ ○농가	230,000	57,500	57,500	115,000
	저온저장시설 지원	○ ○ 면 , ○○면 ○ ○농가	100,000	25,000	25,000	50,000
청양군	소 계		360,000	90,000	90,000	180,000
	포도나무, 마늘, 울금 작목반 기능보강	청양군 일원	160,000	40,000	40,000	80,000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청양군 일원	80,000	20,000	20,000	40,000
	배추, 양파 작목반 기능보강	○○, ○면	120,000	30,000	30,000	60,000
홍성군	농산물 저장 저온창고 지원	홍성군	140,000	35,000	35,000	70,000

<2017년도 본예산>

구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
합계	계	4,625,500	1,156,375	1,156,375	2,312,750
	소 계(30개)	2,405,500	601,375	601,375	1,202,750
천안시	원예용 과수인공교배기 지원 (○○○○○조합)	200,000	50,000	50,000	100,000
	오이작목반 비닐하우스 교체 (○○구 ○부 6개 읍·면)	700,000	175,000	175,000	350,000
	메론작목반 비닐하우스 교체 (○○구 ○○면)	100,000	25,000	25,000	50,000
	유기질비료 퇴비살포기 및 비료지원(○○○농협/ 오이, 메론등 시설하우스 농가)	115,500	28,875	28,875	57,750
논산시	열선지원 (○○○○○○○○○○회/ 1식)	100,000	25,000	25,000	50,000
	논산 배 연작장해방지 (논산시)	100,000	25,000	25,000	50,000
	논산 딸기 연작장해방지 (논산시)	100,000	25,000	25,000	50,000
계룡시	인삼양액제어장치 (○○○○○○○연구회)	90,000	22,500	22,500	45,000
금산군	약초○○농협 약초안정생산 지원 (금산군)	100,000	25,000	25,000	50,000
	백수오 주산지 안정생산 지원 (금산군)	100,000	25,000	25,000	50,000
	지황 주산지 안정생산 지원 (금산군)	100,000	25,000	25,000	50,000
부여군	메론 재배농가 연작장해 지원 (부여읍)	400,000	100,000	100,000	200,000
	연작장해 극복 토마토 채소류 생산 (부여군 토마토 재배면적)	200,000	50,000	50,000	100,000

구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
	소 계	2,220,000	555,000	555,000	1,110,000
부여군	부여 ○○○ 수박, 메론 고품질 생산 (부여군 수박, 메론 재배면적)	400,000	100,000	100,000	200,000
	스크린설치 보수공사(보온덮개, 차광막 등) (부여군)	140,000	35,000	35,000	70,000
	시설하우스설치사업 (○○○○○○○○)	120,000	30,000	30,000	60,000
	저온창고설치사업 (장암면 ○○리 ○○○○조합)	400,000	100,000	100,000	200,000
예산군	3농혁신 아로니아생산지원 (○○○○○○○연구회)	100,000	25,000	25,000	50,000
청양군	○○○○○○○○○○○○작목반 기능보강 (청양군)	60,000	15,000	15,000	30,000
	○○○○○○블루베리 기능보강(토양개량제)/(청양군)	80,000	20,000	20,000	40,000
	고추연구회 기능보강(무인방제기) (청양군)	80,000	20,000	20,000	40,000
	복숭아작목반 기능보강 (○○면, ○○면)	130,000	32,500	32,500	65,000
	수박 및 시설채소 작목반 기능보강 (○○면)	100,000	25,000	25,000	50,000
	사과, 맥문동, 대추작목반 기능보강 (청양군)	100,000	25,000	25,000	50,000
	○○○ ○○조합 법인 기능보강 (청양군)	80,000	20,000	20,000	40,000
	연동하우스 시설 (○○면)	120,000	30,000	30,000	60,000
태안군	화훼농가 입식비 지원 (태안군)	160,000	40,000	40,000	80,000
	○○농협달래박스지원 (○○농협 ○○리)	50,000	12,500	12,500	25,000
	알타리농가지원 (태안군)	100,000	25,000	25,000	50,000

※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은 제외

<2017년도 추경예산>

구분	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
합계	계	3,730,000	932,500	932,500	1,865,000
공주시	소 계	300,000	75,000	75,000	150,000
	연작장해방지사업 (○○○○○○연합회)	100,000	25,000	25,000	50,000
	연작장해방지사업 (○○○○○○연합회)	200,000	50,000	50,000	100,000
보령시	시설포도재배환경개선사업(필름) (○○○○○○단지)	400,000	100,000	100,000	200,000
아산시	인삼농가 토양개량비 지원 (아산시 일원)	100,000	25,000	25,000	50,000
서산시	연작장해 및 생육촉진제사업 (○○○○연구회)	100,000	25,000	25,000	50,000
논산시	소 계	800,000	200,000	200,000	400,000
	고추건조기 설치사업 (논산시 일원)	40,000	10,000	10,000	20,000
	딸기농가 아미노산액비지원사업 (논산시 일원)	40,000	10,000	10,000	20,000
	인삼유통시설현대화사업(저온저장, 선 별장 등)/(○○○○법인)○○	520,000	130,000	130,000	260,000
	연작장해 방지사업 (○○○○○○○○조합)	60,000	15,000	15,000	30,000
	연작장해 방지사업 (○○○○○○법인)	40,000	10,000	10,000	20,000
	연작장해 방지사업 (○○○○연구회)	100,000	25,000	25,000	50,000
금산군	갯잎연작장해 및 생육촉진제 지원사업 (○○·○○○○작목반)	160,000	40,000	40,000	80,000
부여군	소 계	1,340,000	335,000	335,000	670,000
	저온저장고설치사업 (○○면 ○○리)	40,000	10,000	10,000	20,000
	○○○○○○ ○○○ 구입사업 (○○○○○○○○회)	100,000	25,000	25,000	50,000
	시설하우스 신축지원사업 (○○○○○○법인)	1,200,000	300,000	300,000	600,000
청양군	소 계	370,000	92,500	92,500	185,000
	채종, 멜론, 태양초, 토마토작목반기능보강 (청양군 일원)	170,000	42,500	42,500	85,000
	청양군 고추농가 기능보강 (청양군 일원)	200,000	50,000	50,000	100,000
홍성군	연작장해 및 생육촉진제사업 (○○○○연구회)	100,000	25,000	25,000	50,000
태안군	태안군○○협회지원사업(입식) (○○○○○○협회)	60,000	15,000	15,000	30,000